



보도자료

2021. 9. 13.(월) 배포



보도일	2021. 9. 14.(화) 국무회의 시작 시(10:00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·방송·통신 9. 14.(화) 국무회의 시작 시(10:00) 이후 보도 가능				
담당과	지역혁신대학지원과 대학학사제도과	담당자	과 장 사무관	이지현 오명준	(1 044-203-6429) (1 044-203-6926)
			과 장 서기관	김태경 김관중	(1 044-203-6249) (1 044-203-6255)

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◈ 지방대 의·약·간호계열 및 지방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 비율 규정

- 학부 의·약학계열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 40%(강원·제주20%) / 간호계열 30%(강원·제주15%)
- 의·치학전문대학원 최소 입학 비율 20%(강원10%, 제주5%) / 법학전문대학원 15%(강원10%, 제주5%)

◈ 지역인재 요건 구체화

-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전 과정(입학~졸업)을 이수할 것
-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전 과정(입학~졸업)을 이수할 것
- 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9월 14일(화), 국무회의에서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안을 심의·의결하였다고 밝혔다.
 -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개정(2021.9.24.시행)에 따른 후속 조치로,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인재의 요건과 선발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며,
 - '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(2021~2025)'에 따라 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지원 전략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유도를 위한 지원의 하나로 이루어졌다.

□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【지역인재 선발 비율 규정】: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[별표] 제1호 내지 제3호

- 지역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6개 권역으로 유지하고, 지방대학 의·치·한· 약학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40%(강원·제주 20%), 지방대학 간호대학의 최소 입학 비율을 30%(강원·제주 15%)로 규정하였다.
- 지방 전문대학원의 경우, 의·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20%(강원 10%, 제주 5%),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최소 입학 비율을 15%(강원 10%, 제주 5%)로 규정하였다.

【지역인재 요건 구체화】: 시행령 제10조제1항

-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하여는, ①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모든 과정(입학~졸업)을 이수하고, ②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(입학~졸업)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o 해당 요건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.
- □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"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."라고 말하며,
 - "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, 지역
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."라고 밝혔다.
 - 【붙임】「지방대육성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







붙임

지방대육성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했 제6조(위원회의 구성・운영) ① 제6조(위원회의 구성・운영) ① · ② (생 략)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 ③ -----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. ④ ~ ⑦ (생 략) 제10조(대학의 입학기회 확대) 제10조(대학의 입학기회 확대) <신 설>

· ② (현행과 같음)

개 정 안

-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다. -----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① 법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- 1. 법 제15조제2항제1호: 수도권 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 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 업할 것
- 2. 법 제15조제2항제2호: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 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 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 고 졸업할 것(졸업예정인 경 우를 포함한다)

<신 설>

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해당 지 ③ 법 제15조제2항, 제3항, 제4 역의 범위와 학생 모집 비율은 별표와 같다.

- ②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교육 부장관은 별표 제1호 또는 제2 호에 따른 학생 입학 비율을 충 족한 지방대학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- 1.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•연구 여건 개선 지원
- 2.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 을 위한 지원
- 3.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된 각 종 평가에서의 우대 조치
- 4. 그 밖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 하여 필요한 지원
- 항 및 제6항-----

[별표]

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입학 비율(제10조 관련)

1. 지방대학(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입학 비율)

가. 의과대학, 한의과대학,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(한약학과는 제외한다)

해당 지역	범위	학생 입학 비율
1) 충청권	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, 충청 북도	40%
2) 호남권	광주광역시, 전라남도, 전라북도	40%
3) 대구·경북권	대구광역시, 경상북도	40%
4) 부산·울산· 경남권	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	40%
5) 강원권	강원도	20%
6) 제주권	제주특별자치도	20%

나. 간호대학

	해당 지역	범위	학생 입학 비율
1)	충청권	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, 충청 북도	30%
2)	호남권	광주광역시, 전라남도, 전라북도	30%
3)	대구·경북권	대구광역시, 경상북도	30%
4)	부산・울산・ 경남권	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	30%
5)	강원권	강원도	15%
6)	제주권	제주특별자치도	15%

다. 한약학과

해당 지역	범위	학생 입학 비율
비수도권	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	40%

2. 지방 소재 전문대학원(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해당지역의 범위 및 학생 입학 비율)

가. 법학전문대학원

해당 지역	범위	학생 입학 비율
1) 충청권	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, 충청북 도	15%
2) 호남권	광주광역시, 전라남도, 전라북도	15%
3) 대구·경북권	대구광역시, 경상북도	15%
4) 부산·울산· 경남권	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	15%
5) 강원권	강원도	10%
6) 제주권	제주특별자치도	5%

나. 의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

해당 지역	범위	학생 입학 비율
1) 충청권	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, 충청북 도	20%
2) 호남권	광주광역시, 전라남도, 전라북도	20%
3) 대구·경북권	대구광역시, 경상북도	20%
4) 부산·울산· 경남권	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	20%
5) 강원권	강원도	10%
6) 제주권	제주특별자치도	5%

다. 한의학전문대학원

해당 지역	범위	학생 입학 비율
비수도권	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	20%
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법 제15조제4항 각 호 에 해당하는 학생 선발 인원

모집단위별 모집인원	학생 최소 선발인원
50명 이하	1명
50명 초과 100명 이하	2명
100명 초과 150명 이하	3명
150명 초과 200명 이하	4명
200명 초과	5명

- 4. 제1호 및 제2호의 학생 입학비율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계산한다.
 - 가. 제1호의 입학 비율 = 모집단위별 입학전체 인원 중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인원 모집단위별 입학전체 인원
 - 나. 제2호의 입학 비율 = $\frac{ 전문대학원 입학 전체인원 중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인원 전문대학원입학 전체인원$